

최저이수학점은 法으로 規制해야

尹鍾健

(韓國外大·教育學)

대학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오늘의 대학이 본래의 기능 수행이나 사회적 책무성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학이 대학답지 못하다는 뜻이다.

대학이 대학다우려면 우선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들이 양적 팽창에만 급급하다보니, 질적 측면의 향상에는 다소 등한시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自省의 소리가 대학의 안팎에서 강도 높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제도적으로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들을 규제해야 한다. 예컨대 대학의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교육 시설·설

비, 조직 운영체제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기본골격은 통일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학기간 동안 이수해야 할 최저 학점 수를 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운영의 자율화라는 측면에서 학사관리 운영 전반을 완전히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대학에 따라서 학과별로 이수해야 할 학점 수도 자율화하고, 증원·증과도 자유롭게 허용하며,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순전히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大學의自律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학운영은 완전 자율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른바 일류대학들은 모든 것을 대학 자

율에 맡겨도 능히 스스로 사회적 책무성과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하면서 대학답게 잘 처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아직도 자율권을 행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다시 말해서 자율권을 완전히 행사하기에는 여건이 불비하고,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대학운영을 완전 자율화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과행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며, 결국 사회적 책무성이나 학문적 수월성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이 글은 필자의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당분간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도 法으로規制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大學에서의 學點의 意味

대학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양과 질을 학점으로 나타낸다. 즉, 학점을 얼마나 많이 취득했는가를 세어보고 각 학점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학생이 대학 재학기간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를 변별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점은 개별 학생의 학습량과 질을 절대적으로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학의 과정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한 학기 16 시간 이상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 학생이 매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최저 학점 수와 최고 학점 수를 계한하고 있으며, 또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학점 수도 규정하고 있다. 매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은 18 학점이며, 최대 21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 수는 대학에 관계없이 140 학점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 수는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학자율도 좋지만 졸업

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후 1953년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가 180 학점이었다. 그러다가 1954년부터 1972년까지는 160 학점으로 줄었고, 1973년부터는 다시 140 학점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120 학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대학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을 120 학점대로 낮추고 있으며, 절 높은 교육을 하려면 학점 수가 더 줄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법과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는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를 150 학점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爭點은 학점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를 대학자율에 맡겨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모르긴 해도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를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학점 수를 협행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협행법상으로도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만 정해 놓았을 뿐 그 이상은 얼마든지 대학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협행제도처럼 대학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 수는 법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최저 이수학점 수를 협행대로 140 학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120 학점으로 하든, 130 학점으로 하든, 아니면 150 학점으로 하든 일정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몇 학점이 가장 적정한 학점 수인가는 논외로 한다. 아마도 그것은 학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수학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學點을 法으로

규제해야 하는 이유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은 대학다워야 제 구실을 한다. 그러나 사실 어떤 대학이 대학다운 것인지는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그만큼 대학의 多樣性을 강조하는 뜻이기도 하다. 즉, 대학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며, 나름대로의 특성이 두드러져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도 다양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대학이 갖는 共通的 要素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모든 대학은 일정기간의 수학년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학기는 최소한 몇 주 이상 강의를 하여야 하며, 교수의 자격요건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가 적어도 한 학과에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학생 수 몇 명당 교수 1명은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이다. 물론 시설·설비 기준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졸업에 필요한 필수조건과 기준이 분

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대학이 대학답다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기준은 社會的期待를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객관적으로 대학답다는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인정의 기준은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하는 최소한의 구비요건보다 훨씬 더 높다. 따라서 대학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구비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만약 대학설치기준령을 없애고, 누구든지 원하는 대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대학학생정원령을 폐지한다면 대부분의 이른바 일류대학들로 학생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며, 이류 또는 삼류대학들은 당장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류대학교가 완전히 입학문호를 개방하여 누구든지 지원만 하면 입학을 허용한다고 치자. 그러면 당장 학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류대학이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학기를 마음대로 단축하여 1년을 4학기로 나누고, 학기당 10주씩만 수업을 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00학점 정도로 대폭 완화한다면 아마 몇 년이 못 가서 그 대학은 일류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일류대학들이 현재대로의 학사행정체계를 유지하되, 시설·설비를 비롯하여 제반 기준에 관계없이 학생정원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아마 그 때도 이류 또는 삼류대학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류대학이라 할지라도 무한정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으며, 따라서 기타의 대학들도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사실 일류대학들의 경우는 학점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자율화한다고 해도 충분히 스스로 사회적 책무성과 수월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성을 제한하고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은 항상 자율의 의미를 왜곡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자행하는 소수의 저질대학들 때문이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60년대 이전의 대학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대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엉터리 대학들이 많이 생겨날 것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도 앞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자율화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히 부실한 대학들은 사회적 비판을 반기게 될 것이며, 저질로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때가 되면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를 법으로 규제하는 따위는 필요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학점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법이란 대개 필요조건의 下限線만 정해 놓고 있다. 그러한 최저기준마저도 부정한다면 원

칙도 없이 제멋대로 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을 경우, 어떤 대학은 제멋대로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수를 100학점으로 정하고, 다른 대학은 120학점, 또 어떤 대학은 140학점으로 정했다고 치자. 아무리 알찬 교육을 했고, 학교격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같은 학문을 전공했는데 100학점짜리 대학 졸업생과 140학점짜리 대학 졸업생을 똑같이 인정하고 대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대학원에서 똑같은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100학점짜리 졸업생은 과정당 2학점짜리를 수강했다면 50개 과정을 이수한 셈이며, 140학점짜리는 70개 과정을 이수한 셈이다. 말하자면 같은 기간에 20개 과정을 더 이수한 것이다. 따라서 140학점짜리 졸업생은 적어도 100학점짜리 졸업생보다 20가지 경험을 더 한 것이다. 그만큼 학문의 경험의 폭이 더 크다는 뜻이다.

비록 양과 질은 다르다거나 깊이와 넓이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겠으나, 결국 모든 내용은 형식을 수반할 때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어느 대학이 같은 과정을 두고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교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 차이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대학이 스스로 규제를 자청하는 것은 자율을 부르짖

으면서 스스로 권리 를 포기하는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전혀 규제가 없는 완전한 자유는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최소한의 규제는 자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운동경기에서 규칙이 운동경기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예컨대 만약 어떤 대학은 학교재정이 넉넉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이수학점 수도 대폭 늘릴 수 있으되, 학교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대학의 경우는 이수학점 수의 완전자율화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게 된 대

학의 학생들은 어깨가 으쓱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의 학생들은 열등의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즉, 그만큼 공부를 더 적게 하였다는 것이 학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학점을 많이 취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공부를 더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학점을 더 많이 취득했을수록 더 많이 공부했다는 징표가 된다. 따라서 졸업 이수학점 수가 대학이나 학과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아직은 自律 力量 미숙해

자율이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느끼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 즉自律能力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

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로는 모든 것을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막상 자율권을 행사하라면 뚜렷한 소신이나 주관도 없으면서 다른 대학의 눈치를 살피기 급급한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의식수준으로는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수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자율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기관평가인정 및 학과평가인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의 현실에서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학점 자율화는 혼란만 초래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학문적 수월성을 실추시킬 따름이다. ■